



제428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사회복지사업의 한 분야로 학교사회복지 명시 >

■ 남인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1257호)

2025.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오세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사회복지사업의 한 분야로 학교사회복지 명시	3

I. 개요

1. 남인순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1257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남인순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7. 3.

(3) 회 부 일 : 2025. 7. 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사회복지는 학교생활 중 학생들에게 발생하는 학업 부진, 학교 생활 부적응, 학교폭력 및 아동학대 등의 다양한 문제를 학생, 학교, 가정 및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예방하고 해결함으로써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향상시키고 모든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도와주는 사회복지의 전문분야임. 구체적으로는 학생 문제 관련 전문가 지원팀 운영, 폭력예방교육 등 공동체 교육 및 선도, 가정방문 등을 통한 학교와 가정의 협력 활동, 지역사회 학생복지 지원협의체 결성·운영 등 학생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학교사회복지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사회복지사업의 내용으로 학교사회복지를 명시하지 않고 있는바, 사회복지의 전문분야로서의 학교사회복지의 위상 및 역할 정립을 위해 현행법에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학교사회복지의 정의를 신설하고 이를 사회복지사업

의 내용에 명시함으로써 학교사회복지가 사회복지사업의 한 전문분야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신설 등).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사회복지사업의 한 분야로 학교사회복지 명시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학교사회복지의 정의를 신설하고, 사회복지사업의 내용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u>지역사회복지</u> ,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1. ----- ----- ----- ----- ----- <u>지역사회복지</u> , <u>학교사회복지</u> ----- ----- ----- ----- ----- ----- -----.
가. ~ 허. (생략)	가. ~ 허. (현행과 같음)
2. (생략)	2. (현행과 같음)
<신설>	3. “ <u>학교사회복지</u> ”란 학업 부

3. ~ 7. (생략)	<u>진, 학교생활 부적응, 학교폭력 및 아동학대 등 학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학생 문제를 학생, 학교, 가정 및 지역사회가 함께 예방·해결하여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향상 및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u> 4. ~ 8. (현행 제3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	--

나. 검토의견

- ‘학교사회복지’란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생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만이 아닌 개인을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문제로 보아,

학업 부진, 학교폭력 등 학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학생 문제를 학생, 학교, 가정 및 지역사회가 함께 예방·해결하여, 학생의 교육 받을 권리를 향상하고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는 것임.
-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 제11조¹⁾에서는 영역별 사회복지사 자격자로서 ‘학교사회복지사’ 자격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2]²⁾에 규정된 수련 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이 가능함.
- 개정안은 현행법이 학교사회복지를 사회복지사업의 내용으로서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의 전문분야로서 학교 사회복지의 위상 및 역할 정립을 위해 현행법에 이를 명확히 규정 하려는 취지로 보임.

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자격증 발급 신청일 기준으로 제11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등급은 1급·2급으로 하되, 정신건강·의료·학교 영역에 대해서는 영역별로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료사회복지사·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부여하고,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료사회복지사·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은 1급 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부여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등급별·영역별 자격기준 및 자격증의 발급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2(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기관 및 수련과정) ① 법 제11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2. 학교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부서를 갖추고, 5년 이상의 학교사회복지사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1명 이상이 수련지도자로 상시 근무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p.10 참고자료1

- 사회복지를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충족과 적절한 삶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사회적으로 재분배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³⁾, 학교사회복지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생 및 가족의 상담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자원을 발굴·연계하는 것으로서, 사회복지의 한 분야로 볼 수 있으므로, 현행법 제2조에서 ‘사회복지사업’을 정의함에 있어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재가복지 등과 더불어 사회복지의 전문분야로 명시하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다만, 2025년 1월 21일 제정되어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 예정인 「학생맞춤통합지원법」⁴⁾에서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사회복지사업법」에서 별도로 규정할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유혜림, “한국 사회복지학의 최근 연구경향: 연관규칙 분석의 활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사회연구 vol 38, 2018

4)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학생이 학교와 학교 밖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 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학습, 복지, 건강, 진로, 상담 등 통합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전인적 인재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맞춤통합지원”이란 학생의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경제선 지능, 아동학대 등 다양한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소하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받을 권리 향상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지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제2호에 따른 지원대상학생에게 이루어지는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 등의 지원

나. 그 밖에 학생 등의 학습참여를 도모하기 위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학생의 조기발견 체계 구축

2. 원활한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사업개발, 지원체계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3.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교육감을 포함한다)와의 연계·협력 체계 구축

4. 학교 및 교직원의 전문성 향상

5.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평가 및 조사·연구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교육에 관한 각종 시책을 시행할 때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교교육의 과정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보호자와 교원 등은 보호하거나 지도하는 학생이 학생맞춤통합지원을 통하여 전인적으로 성장하고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서는 학생맞춤통합지원을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받을 권리 향상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 등의 지원으로 정의하고, 학생맞춤통합지원 추진체계 및 협력체계, 학생맞춤통합지원의 내용,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학업복귀 지원,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음.

학교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학교사회복지에 관하여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효율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학교사회복지’가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여 교육의 관점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학생의 가정과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사회 복지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도 있으므로, 학교사회복지의 위상 및 역할 정립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학교사회복지의 정의와 함께 사회복지사업의 전문분야임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특히,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⁵⁾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등의 자격에 대하여, 법 제2조에서는 의료복지 및 정신질환자의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을 사회복지사업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학교사회복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5)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자격증 발급 신청일 기준으로 제11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등급은 1급·2급으로 하되, 정신건강·의료·학교 영역에 대해서는 영역별로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료사회복지사·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다.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학교에서 사회복지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법률상 사회복지사업 내용에 ‘학교사회복지’를 별도로 규정하고, 정의를 신설하는 개정안에 동의함.

- 참고로,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을 규정(‘20년~)하고 있어 사회복지분야의 한 영역으로 ‘학교사회복지’를 분류·시행하고 있음.

□ (교육부) 학교에서는 그동안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 학생 대상 정책을 포괄하여 ‘교육복지’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 법률에 ‘학교사회복지’의 개념을 별도로 규정할 경우 현장 혼란 발생이 우려되고, 학교를 대상으로 한 복지 기능의 확대는 학교제도의 특수성 및 자율성 등에 근거하여 교육법 체제에 의하여 정의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개정안의 학교사회복지의 정의가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생맞춤통합지원”의 정의와 유사한 측면이 있고, 이로 인해 학교현장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이 곧 학교사회복지로 오인될 우려가 있으며, 일부 교육청에서도 동 개정안이 「학생맞춤통합지원법」과 유사·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본 개정안은 학교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와 학교사회복지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조치로서 적극 찬성함.

학교사회복지는 학교생활부적응, 학교폭력 및 아동학대 등 학생의 다양한 문제를 예방·해결하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과 전인적 성장 지원이라는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사회복지

기본법인 「사회복지사업법」 내 ‘학교사회복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본 개정안은 필요한 입법 사항임.

- (전문상담교사노동조합)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시행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에서 진단·상담·치유와 관련된 내용을 이미 규정하고 있으므로 업무의 중복이 발생함.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협력을 중심으로, 특정 업무에 한정 짓지 않는 것이 필요함.

문 의 처
02)6788-5497

【참고1】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	-----------------------

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과정(제4조의2제2항 관련)

영역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구분	과목	시간	과목	시간
	합계	1,000	합계	1,000
이론	소계	150	소계	150
	법과 정책	15	법과 정책	15
	임상 윤리	15	윤리와 철학	15
	이론 및 실제	85	이론과 실제	100
	조사 연구	15	기획 및 행정	20
	기획 및 행정	20		
실습	소 계	830	소 계	830
	법과 정책	20	학교환경 이해	40
	임상 윤리	20	사정 및 평가	120
	이론 및 실제	750	체계별 개입 실천	470
	조사 연구	20	위기개입 실천	100
	기획 및 행정	20	행정 및 재정관리	100
학술활동	-	20	-	20